

제1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6. 10.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6월 10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윤 면 식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0년도 제10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1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0년도 제10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1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차기
회의에 보고

2) 의결안건 심의

의결안건 제1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하였던 자본시장법 개정안(20.3월)이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Risk 축소를 위해 G20합의로 도입한
거래정보저장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하였던 자본시장법 개정안('18.3월 ·'19.5월)이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펀드, PEF, 클라우드펀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2호 『알파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이 알파자산운용의 대주주가 되고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3호 『이화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이 이화자산운용의 대주주가 되고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지배구조법 개정안(18.9월)이 20대 국회 회기만으로 폐기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내용

○ (위원)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 한다는 조항 관련 해서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몇 가지 일괄교체 가능한 사례를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동일시점에 임용되어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이사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지?

○ (보고자) 이번 개정안에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CEO 또는 내부임원들의 사외이사에 대한 통제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경험과 지식이 전수되어야 하는데, 일괄로 교체하게 되면 지식과 경험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내이사들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 이번 개정규정은 이미 임용되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 시행 이후 선임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법 부칙에 두었음.

- (위원) 예를 들어 임기 3년인 5명이 동시에 되면 만기도 동시에 돌아올 텐데 어떻게 시차를 두고 할 것이냐 하는 것임. 어떤 사람은 임기가 2년이 되어야 하고 3년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 (보고자)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됨. 지금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임기가 한 번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사외이사의 임기가 분산되어 있지만 일시에 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런 부분은 임기를 차등화해서 최초 적용시에 어떤 이사들은 임기 2년, 어떤 이사는 임기 3년으로 하면서 임기만료일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위원) 교차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순조롭게 잘 이행될 수 있으면 좋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5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17.5월·'19.6월)이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험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는 내용

- (위원)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부분과 관련하여 사전보고 사항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것이 혹시라도 직·간접적으로 부동산투자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조금 우려됨.
- (보고자) 사후보고로 전환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후보고로 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임. 부동산투자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음.
- (위원)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든 것은 좋으나 소비자 권익 침해 발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보고자) 현행 보험업법상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음. 이를 위반했을 때 회사 등에 대해서 형벌과 별개로 행정상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각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시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위원) 소비자 권익과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의 내용에 대한 법령상의 불명확성, 불확정성이 있어 보임. 법안은 유지하되, 추후 시행령 등 입법과정에 고려해주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6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

※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19.6월)이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축은행의 신고제도 합리화와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근거 정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7호 『(주)스마트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스마트로가 가맹점모집인을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8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19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20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201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제20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는 내용

- (위원)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라는 개념을 폐지하는 것은 아닌지? 시중에서 신용등급이라는 것을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 (보고자) 현재 신용정보회사(이하 CB社)가 개인에 대해 1~10 등급까지 제공하던 것은 이제 제공되지 않게 되나,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까지 막는 것은 아님.
- (위원) 그러면 일정한 신용점수를 받은 개인이 A은행이나 또는 B은행을 갈 때 그룹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음.
- (보고자) 그렇지만 점수는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점수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임.
- (위원) 개인등급이 3등급이다, 4등급이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런 등급보다 점수가 600점이나 700점이라고 할 때 그 600점이라는 평가는 CB社가 하는 것인지 은행이 하는 것인지?
- (보고자) CB社의 등급을 점수로 바꾸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CB社가 점수를 내 준다는 의미임.
-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할 때 평점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3등급”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 것인지?

- (보고자) CB社에서는 “3등급” 이런 말을 쓰지 않게 됨.
- (위원) 그러면 어떤 점수를 개인이 부여 받았을 때 그 개인이 A라는 은행에 갔을 때는 우량등급, B라는 은행에 갔을 때는 비우량등급 이렇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은행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을 거 같음.
- (보고자) 지금도 CB社마다 다른 등급을 받고 있고 은행이 그 등급에 대해서 대출을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 (위원) 결국 1등급, 2등급, 3등급 하던 것을 100점, 110점, 120점해서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10단계로 절벽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 매끄럽게 가자는 취지인 것 같음.
- (위원) 최소한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 및 애매성은 조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
- (보고자)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해서 이 등급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통용된다고 생각하던 것은 있었는데 그것이 점수제로 전환이 되면 그 점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됨. 현재 5대 시중은행에서는 작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여신심사가 좀 더 정교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음.

○ (위원) 그러니까 81점부터 89점까지 다 A인데 89점 A는 81점 A보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고, 개인들이 불리한 면이 안 생기도록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업권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위원) 그런데 5개만 상정하면 다 끝나는 것인지? 신탁 같은 곳은 이런 점수 같은 것을 안 하는지?

○ (보고자) 법에 있는 내용들은 타법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고 이번에 시행령에 “등급”이라는 용어가 있는 규정들을 다 찾아서 한 것임.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서민 금융법에 반영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4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조회 서비스 제공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5호 『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민금융진흥원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을 정관에 반영토록 정관변경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6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207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시스템적 중요 은행(또는 은행지주회사)(이하 D-SIB) 선정이 해제되거나 의무 자본적립 수준이 낮아진 경우 그 결정일 즉시 완화된 적립수준이 적용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금번 개정으로 D-SIB 결정일이 중요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매년 6월중 결정하던 관례와 달리 결정시점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은행들이 미리 알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보고자) 2018년부터 D-SIB 선정은 항상 6월에 해 왔고 올해도 차기 회의에 올릴 예정임. 내년 이후 D-SIB 선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하게 시장에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위원) 선정 해제시 자본적립 의무 변경 시점을 “결정일” 보다는 익월말이나 분기말 등으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은지?
- (보고자) 선정 해제시 자본적립 의무 변경 시점을 “결정일”로 하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은 분기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각 분기말에 적용되게 됨.
- (위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결정일”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를 분기말에 적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여지도 있음.
- (보고자) 혼선이 없도록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음.
- (위원) 일단 선정되면 선정이 해제되는 사유가 상당히 드물게 발생할 것 같은데 실제로 선정 해제된 사례라든지 선정이 해제될 예정인 사항이 있는지?

- (보고자) 지난 4.16일 금융위에 상정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소규모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D-SIB선정에서 제외하고 1%p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린바 있음. 이러한 내용과 연계되어 금번 개정을 추진한 것임. D-SIB선정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는 자본 적립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지만, 자본적립 부담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준비기간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자본적립부담을 즉시 완화하는 것으로, 실제로 바젤위원회에서도 G-SIB와 관련하여 추가자본 적립부담이 커진 경우에는 이행기간은 충분히 두되 부담이 작아진 경우에는 즉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0호 『2020년 1/4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현황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11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10분 폐회)